

2021년부터 적용되는 핵심 개정세법

구재이(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, 세무법인 굿텍스 대표세무사)

- 새해부터 다주택·단기보유주택 양도시 양도세 대폭 증과세
- 1세대 다주택자의 1주택 비과세는 최종1주택 보유시부터 2년 보유필요
- 종합·양도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10억원 초과시 45%
-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8천만원까지로 인상
- 초과배당시 배당원천징수 + 증여세 과세, 10년내 증여합산대상
- 말았던 '초과유보과세' 불발로 부동산임대 법인도 과세대상 제외

2020년 12월 국회에서 주요 개정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이후 시행되는 개정세법을 ▲국민생활세금 ▶부동산세금 ▶금융세금 ▶기업세금 ▶조세감면세금 등 세제수요자나 분야별로 핵심내용만 간추렸다.

〈문의 | 구재이 세무사(세무법인 굿텍스) goodtax01@daum.net〉

◆ 국민생활세금 개정세법

▶**종합·양도소득세 최고세율(45%) 인상**(2021년 이후 발생소득, 양도분부터 적용) : 종합소득세,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 인상 42%→45% (5억~10억원 구간은 종전대로 42% 유지)

▶**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축소**(2021년부터 적용) : ①**상장법인 제외**: 코스피, 코스닥 등 상장법인은 적용범위에서 제외 ②**과점주주 범위 축소**: 과점주주가 의결권 등 권리행사 가능시 적용 → 임원임면권 행사, 사업방침결정 등 법인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시만 적용

▶**월세세액공제 대상 소득요건 완화**: 월세액에 대하여 12%세액공제(10%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+ 종합소득 6천만원이하 요건)를 적용받을 수 있는 5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의 '종합소득금액' 기준요건 완화(4천만원 → 4500만원 이하)

▶**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세 추가**(2021년 이후 전자신고분부터 적용) : 전자신고시 종소세, 법인세 건당 2만원, 부가세 건당 1만원 세액공제(공제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, 세무법인 750만원) →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도 건당 2만원 신설

▶**전자고지세액공제 신설**(2021년 이후 최초 전자송달분부터 적용) : 중간예납 소득세, 예정고지·예정부과하는 부가세, 과표와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고지에 한해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

자에 세액공제 신설(금액은 납부세액의 범위에서 시행령에서 정함)

▶**가상자산 과세 신설**(2022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) : ①**소득종류**: ‘기타소득’으로 연간 손익통산하여 과세(무형자산소득으로 간주) ②**과세표준**: 연간 양도대가(시가) - (취득가액+ 부대비용) ③**세율**: 20%(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) ④**분리과세**: 종합과세 하지않고 분리과세로 연1회 신고납부 ⑤**비거주자, 외국법인도 적용**: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$[\min(\text{양도가액} \times 10\%, \text{양도차익} \times 20\%)]$ 을 원천징수의무 ⑥**증여·상속하는 가상자산 평가**: 상속세, 증여세 과세되는 가상자산은 거래규모, 거래방식 등 고려해 재산평가근거 마련

▶**개인이 서화·골동품 양도소득은 항상 ‘기타소득’**(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) : 계속적·반복적 거래시 사업성을 인정해 사업소득 과세 →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화·골동품 양도소득은 항상 ‘기타소득’으로 과세

▶**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제도 개선**: ①**직권신청제 도입**: 근로·자녀장려금대상자 신청 누락한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신청(신청자 동의시에 한정)도 가능 ②**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**: 연 150만원 미만 → 연 185만원 미만 ③**반기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**: 결정일인 상반기 12.15, 하반기 6.15.부터 20일내 → 15일 이내

▶**‘주세법’을 ‘주세법’과 ‘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’로 분법** : 주세부과하는 ‘주세법’과 주류행정을 규율하는 ‘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’로 분법

◆ 부동산세금 개정세법

▶**종합부동산세율 인상**(2021년 12월 과세분, 즉 2021.6.1. 보유분부터 적용) : ①**개인소유 주택분 세율 인상**: (일반) 과표 구간별로 0.1~0.3%p 인상 (3주택이상, 조정대상지역 2주택) 0.6~2.8%p 인상 ②**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**(전년대비 중부세+재산세액 증가 한도) 200% → 300% ③**실수요 1주택자 세부담 경감**: 1주택 보유 고령자세액공제율 인상(구간별 +10%p), 고령자공제율 + 장기보유공제율 등 합산공제율 한도 인상(70% → 80%) ④**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**: 9억 기본공제 +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 허용

▶**양도소득세 과세 대폭강화**(2021.6.1.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) : ①**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 인상**: 2년 미만 보유주택(입주권, 분양권 포함) 1년미만 40% → 70%, 1~2년 보유: 기본세율 → 60% ②**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세율 10%p씩 인상**: 기본세율 + 10%p → 20%p(2주택) 또는 20%p → 30%p (3주택 이상)

▶**1세대1주택자 보유·거주요건 강화** : ①**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조정**(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): 2주택 (일시적 2주택 제외)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이후 1주택 보유일부터 기산해 보유기간 계산(소득령 § 154⑤) ②**1세대1주택 9억초과분 장기보유공제 거주요건 추가**(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): 최대 10년간 80%적용하되, 거래가액 9억 초과시 장기보유공제를 보유기간만 적용하던 것을 보유기간 + 거주기간 추가적용 : 보유요건 연 4% + 거주요건 연 4% 최대 연 8%(10년간) 합산 ③**양도주택 수에 ‘분양권’도 포함**(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): 1세대1주택자,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등 양도세 대상 주택수 계산시 주택분양권도 포함

▶**법인 주택과세 강화**(2021.6.1.현재 보유분부터 적용) : ①**종합부동산세율 인상**: 법인의 2주택 이

하(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) 3%, 3주택 이상(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) 6% ②**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**: 법인보유주택은 6억원 중부세공제 폐지 ③**세부담상한 폐지** ④**법인의 8년 장기임대등록주택 과세전환**: 중부세 비과세→2020.6.18.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8년 장기임대주택 등록주택은 중부세 과세 ⑤**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인상**: 10%→20%(사원용 주택은 제외)

▶**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사후관리 완화**(2020.8.18.이후 민간임대주택 등록신청분부터 적용): ①**자발적 등록말소 추정제외**: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등록말소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않은 경우도 감면세액을 추정하지 않음 ②**의무임대기간 연장**: 신규등록 공공지원,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세액감면요건으로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

▶**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의 양도세 감면조정**: ①**양도소득세 특례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대상 제한**: 2020.7.11.이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한 아파트는 **제외(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적용제외)** ②**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**: ‘소득’은 임대기간 발생한 것에 한정 ③**적용대상 · 기한**: 2020.12.31.까지 등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한정 (민간건설 임대주택은 현행처럼 2022년 말까지로 유지)

▶**농어촌주택 등 양도세특례 요건 완화**(2021년 이후 취득·양도분부터 적용): ①**면적기준 폐지**: 농어촌주택, 고향주택 취득시 해당 주택의 대지면적 660제곱미터(200평) 이내로 제한 폐지 ②**지역확대**: 소재지 제외지역을 지정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

◆ 금융세금 개정세법

▶**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강화**(2021년 이후 배당을 지급받는분부터 적용):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포기, 특수관계인 초과배당 지급시 $\max(\text{배당소득세}, \text{증여세})$ 과세 →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(증여가액에서 소득세 차감, 추후 증여합산 추가과세)

▶**공모인프라펀드 투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**: 한국판 뉴딜 SOC 민간투자 활성화 위해 배당소득 14%분리과세(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, 종합소득 합산배제)

▶**특정SOC 집합투자기구(뉴딜인프라펀드)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**(2021~2022년까지 적용):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(납입한도 2억원) 배당소득 9%분리과세 신설

▶**벤처캐피탈 등의 소부장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, 배당소득 비과세**: 소재 · 부품 · 장비관련 유망중소기업에 벤처캐피탈 등이 출자시 비과세

▶**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**: 벤처기업 투자자(엔젤투자)에 투자액의 10~100%소득공제(종합소득금액의 50%한도), 창업자등에의 투자주식 양도세, 증권거래세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

▶**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비과세 등 세제지원 개편**: ①**가입대상 확대**: 소득있는 자, 농어민 → 19세 이상 거주자(15~19세 근로소득자도 가능) ②**자산운용범위 확대**: 예적금, 집합투자증권 → 상장주식도 허용 ③**계약기간 5년 → 3년 이상 자율설정**(만기시 연장허용) ④**이월납입 허용**: 전년도 미납분 이월납입(연 2천만원, 최대 1억원) 허용 ⑤**적용기한 폐지**, 항구적 세제지원

▶**증권거래세 인하**: 증권거래세 현행 1만분의45 → (2021~2022) 1만분의 43(0.02%p ↓) 인하, (2023년 이후) 1만분의 35(0.08%p ↓)로 추가인하

▶**금융투자소득 신설**(2023년부터 시행): ①**금융투자소득 적용대상**: 이자 · 배당, 주식은 양도소득

세, 증권거래세 과세 → 이자·배당은 현행 종합유지하되, **금융투자상품**(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채무지분·수익·파생결합·증권예탁·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)으로 양도, 상환, 환매 등 실현된 소득을 과세대상 **②기본공제**(국내 상장주식, 공모 주식형 펀드합산 5,000만원, 기타 금융소득 250만원), **세율 20%**(3억 초과분 25%) **③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**: 모든 금융투자 소득과 손실합산, 결손금 이월공제 5년간 허용 **④과세방법**: 반기별 원천징수(금융회사), 반기별 예정신고(직접투자)

▶**펀드과세 상장주식 합산, 간 손익통산 허용**(2023년부터 시행): 펀드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 제외 → 펀드 간, 다른 투자소득간 손익통산 허용

▶**신��세제 개선**: **①과세방식 변경**(2021년 이후 신��계약 체결분부터 적용): 신��소득 수익자 과세, 신��재산은 위·수탁자 과세 혼재 → 수익자 과세하되, 신��재산에 대한 법인세과세방식 선택 허용 **②부가세**(2022.1.1.이후 신��계약 체결분부터 적용): 납세의무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(임대 등의 경우 위탁자 납세의무 유지) **③중부세**(2021년 중부세 과세분부터 적용): 신��부동산에 대해 위탁자에 과세, 수탁재산에 물적납세의무 **④소득세·법인세**(2021년 이후 신��계약 체결분부터 적용): 위탁자가 실질수익자인 경우 위탁자에 납세의무 **⑤상속세**(2021년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): 유언대용신��, 수익자연속신��시 위탁자·수익자 사망시 증여세 아닌 상속세로 과세

◆ 기업세금 개정세법

▶**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조정**(2021년 이후 적용) : **①간이과세자 매출기준 상향**: 연 매출액 연 4,800만원 미만 → 8,000만원 미만(부동산임대, 과세유흥업은 현행기준 4,800만원 유지) **②신규대상자 세금계산서 수수의무**: 조정된 매출범위(연 4,800~8,000만원)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부여 **③납부면제자 확대**: 연 매출 3,000만원 미만 → 4,800만원 미만 **④매입공제방식 조정**: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미적용,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1%로 일반·간이과세자 통일,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(매입액×0.5%로 조정)

▶**착한 임대인세액공제(임대료 인하액의 50%) 적용기한 연장**(2021이후 과표신고분부터 적용): 적용기한 2020.06.30. → 1년 연장해 2021.6.30.까지 대상적용

▶**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특례 1년간 한시적용**(2021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) : **①대기업**: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 50% 한도 **②중소·중견기업**: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75%한도로 가속상각 적용(2020.6.30. 종료된 것을 재시행)

▶**유통기업 지원**(2021년 이후 창업, 신증설분부터 적용) : **①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도 포함**: 국내 복귀후 5년간(수도권복귀는 4년간) 100%+ 추가2년간 50%법인세·소득세 감면 **②국내복귀 전 해외생산량 감축비율 등 요건 폐지**,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계산방식을 개선: 국내복귀소득×min[1, (해외감축량/국내생산량)]

▶**외국인기술자 5년간 소득세 50%소득세 감면** : **①인적요건 확대**: 외국인연구원 → (이공계 학사학위 + 5년이상 R&D경력)이나 (이공계 박사학위 + 2년이상 R&D경력) **②취업대상기관 확대**: 외국인투자기업 R&D센터→ 기업부설연구소, 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

▶**조합법인 당기순이익과세 2년간 연장**: **①농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의 경우** 과표 20억원 이하 9%, 20억원 초과시 12%세율 적용 2년간 연장(대규모 조합법인은 과세특례 계속 적용)

▶**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합리적 제도조정**(2021년이후 신고분부터 적용) : **①대상**

일부 조정: {소득의 65%(→70%로 조정) - (투자+임금증가 + 상생금액)}×20%, 투자 제외형
과세방식: {소득의 15% - {임금증가(총급여 7천만원 이하 → 8천만원 이하로 조정)} + 상생금
액}×20% ②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: 1년→2년

▶**국제조세 관련 상호합의절차 개선**: 상호합의의 신속타결을 위해 상호합의개시후 2~3년내 분쟁해결 미합의시 중재인단 구성하는 ‘중재’ 제도 국조법상 도입

▶**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 50%인하**: 미제출 0.5%, 지연제출 0.25% → 미제출 0.25%, 지연제출 0.125%

▶**공익법인 관리강화**: ①공익법인 통합: 일반, 성실공익법인 구분 폐지 ②출연재산 운용소득의 매년 공익목적사용 최소비율 상향: 70%→80% ③출연재산가액의 1%(총발행주식수의 10%이상 초과보유하는 의결권불행사+자선·장학·사회복지목적 단체는 3%)이상을 매년 공익목적 미사용시 제재: 가산세 부과(미달사용액의 10%) → 가산세 + 주식 5%초과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추징 ④주식5%초과 보유시 신고의무 강화: 발행주식총수의 5% 초과보유시 5년 주기 → 매년 의무이행여부를 신고(신고미이행시 자산총액의 0.5%가산세 부과)

◆ 조세감면 개정세법

▶**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(2021년 이후 신고분, 2020년투자분도 적용)**: ①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: 현행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10여개의 투자세액공제를 통합, 단순화 ②네거티브공제방식 도입: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(토지·건물·차량·비품 외 모든 사업용유형자산)시 공제 ③투자증가 인센티브강화: 기본공제(투자액×대기업1%, 중견3%, 중소기업10%) + 추가공제(당년-직전3년평균) × 추가공제율(전부 3%, 기본공제액의 200%한도)

▶**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(2020년말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분도 소급적용)**: 세액공제 5~10년간 → 모든 조특법상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통일

▶**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(2020년말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분도 소급적용)**: 외국납부 법인세 미공제액 이월공제기간 5년→10년으로 확대, 10년내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소멸 → 손금산입 허용

▶**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(2021년이후 신고분, 2020년분부터 15년 적용)**: 법인세 결손금이월공제기간: 10년 → 15년으로 확대

▶**고용관련 조세지원 강화 및 기한연장(2022년말까지 연장)**: ①근로소득증대세제(22년말까지 연장):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해당연도 임금증가분에 중소기업 20%, 중견10%, 대기업5% 세액공제 ②정규직 전환(2021년말까지 연장): 전환인원당 1,000만원(중견 700만원) 세액공제 ③육아휴직 후 복귀(공제율 대폭 확대 및 2022년말까지 연장):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1년간 인건비의 10%→30%(중견 5%→15%) 세액공제 ④경력단절여성(2022년말까지 연장): 고용후 2년간 인건비의 30%(중견 15%) 세액공제

▶**고령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세액공제액 인상**: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시 중소기업 3년간(대기업 2년간) 1인당 400~1,200만원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우대 대상(청년, 장애인, 국가유공자)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